



# 경제·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자동차보험

전용식 연구위원, 김유미 연구원

지난 2월 21일 육체노동자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대법원 판결은 경제·사회의 구조적 변화가 우리 사회에 반영되는 출발점임. 보험업의 경우, 자동차보험과 배상책임 보험금 산정 기준이 변경되어 보험금이 증가하게 됨. 경제적 측면에서 최저임금 정책은 자동차보험 휴업손해, 상실수익 지급 기준인 일용 노임을 상승시켜 보험금 증가폭을 확대시킬 것임. 또한 정부의 공적보장이 확대되고 있는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등 정부의 복지정책도 보험금에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임. 경제·사회적 변화에 따른 자동차 보험 보험금 증가세 확대에 부합하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함

■ 대법원의 이번 육체노동자 가동연한 상향 판결은 우리나라 경제·사회의 구조변화가 제도에 반영되는 출발점인데, 본고에서는 이러한 구조변화가 자동차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자 함

- 지난 2월 21일 대법원은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구조의 변화, 법제도의 정비 및 개선 등을 반영하여 육체노동자 가동연한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상향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결함<sup>1)</sup>
- 경제규모의 확대, 국민 평균여명의 상승과 높아진 실질은퇴연령, 향후 국민연금 연금수급 개시연령 연장 등의 변화를 반영한 판결인데, 이로 인해 자동차보험 보험금과 배상책임 보험금 산정 기준이 변경되어 관련 보험금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가동연한 상향으로 인한 자동차보험 상실수익 보험금은 2017년 보험금 대비 1.2%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상실수익은 사망 혹은 후유장애로 인해 피해자가 얻을 수 있었던 수익인데, “일을 하지 못한 기간” 혹은 “얻을 수 있었던 수익”이 가동연한 연장으로 증가하기 때문임
  - 상실수익 이외에도 사고로 인한 부상을 치료하는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해서 수입을 얻지 못한 손해인 휴업손해, 사망·후유장애 위자료 등도 변동할 수 있어 보험금 증가폭은 확대될 수 있음

1) 대법원 2018다248909손해배상(기)일반육체노동자 경험직상 가동연한 사건 보도자료(2012. 2. 21), 육체노동자 가동연한은 ‘가동기간’의 종료시점으로, 사고가 없이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생활하였다면 소득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최종 시점임. 그리고 가동기간은 원칙적으로 성년이 되는 날부터 시작함. 자세한 내용은 황현아(2018. 12. 24), 「육체노동자 가동연한 상향의 쟁점 및 영향」, 『KiRi리포트』 참조

- 이외에도 최저임금정책, 복지정책, 운전자의 고령화 등은 보험금 원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음

〈표 1〉 경제 사회구조 변화와 자동차보험

구분	개요	영향 받는 대인배상 항목
경제정책 변화	최저임금 인상, 자동차보험 일용노임 상승	휴업손해, 상실수익
복지정책 변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치료비
사회구조 변화	가동연한 연장, 고령운전자 증가	휴업손해, 상실수익, 치료비, 향후치료비

■ 최저임금 인상은 가동연한 연장과 더불어 자동차보험 휴업손해와 상실수익 보험금 산정 요소인 일용노임에 영향을 미치는데, 가동연한 연장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동차보험 보험금은 최소 1.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정부의 경제정책이 과거의 수출주도 성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임금불평등 완화, 소득증가가 소비와 생산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구축으로 전환됨
- 시기별 평균 임금 상승률을 보면 2009년부터 2017년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률은 2000년부터 2007년 기간에 비해 하락하였고, 제조업 단순노무직과 건설업 보통인부 평균 일급 상승률도 하락함
  - 2018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6.4% 인상되었는데 자동차보험 일용노임은 7.6% 상승함
  - 시기별로 실질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실업률이 상승하는 고용 여건의 악화도 제조업 단순노무직과 건설업 보통인부 평균 일급 상승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임
- 앞으로 2년간 최저임금이 10%씩 인상될 경우 자동차보험 일용노임은 평균 7.0% 상승할 전망이다<sup>2)</sup>
  - 제조업 단순노무직 일일 임금은 연평균 3.4%, 건설업 보통인부 일일 임금은 8.7%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실질경제성장률을 2.5%, 실업률을 3.8%로 가정한 결과인데, 고용 여건이 개선될 경우 임금 상승률은 확대될 수 있음
- 상실수익과 휴업손해 보험금의 95% 이상이 일용노임 기준으로 지급되는데, 자동차보험 일용노임<sup>3)</sup>의 상승으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보험금은 연간 538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17년 전체 보험금 10조 8,602억 원의 0.50%임<sup>4)</sup>
  - 고용 여건에 따라 임금상승률이 달라질 수 있는데, 보험금 증가속도는 고용 여건에도 영향을 받을 것임

2) 1993년부터 2018년까지 자료를 건설업 보통인부 임금상승률, 제조업 단순노무종사원 임금상승률, 실업률 등을 내생변수로 하고, 최저임금 인상률, 생산성, 건설업 GDP디플레이터, 경제성장률 등을 외생변수로 하는 연립방정식 모형으로 저자가 분석한 결과임  
 3) 자동차보험 일용노임은 제조업 단순노무종사원의 임금과 건설업 보통인부 임금의 평균값임  
 4) 보험개발원 총괄 상황표(2017. 1~12) 증권별 지급보험금 기준

〈표 2〉 시기별 주요 임금, 자동차보험 일용노임 상승률과 거시경제지표

(단위: %)

기간	최저임금 인상률	건설업 보통인부 일급 상승률	제조업 단순노무종사원 일급 상승률	자동차보험 일용노임 상승률	실질경제 성장률	실업률
1993~1997년	8.6	10.4	8.3	9.5	7.8	2.4
2000~2007년	10.9	7.3	6.4	6.9	5.4	3.7
2009~2017년	6.1	6.0	4.8	5.5	3.1	3.5
2018년	16.4	8.8	5.6	7.6	2.7	3.8
예측 기간 평균	10.0	9.2	4.5	6.9	2.5	3.8

주: 임금 상승률, 실질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증가율이고 실업률은 기간 중 평균치임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중앙회

■ **기동연한 연장, 경제정책 이외에도 고령 운전자 증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 등의 경제·사회의 구조적 변화도 자동차보험 보험금 원가 상승세를 추세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음**

- 고령 운전자 비중 확대는 평균 치료비 수준을 상승시켜 대인보험금을 증가시킬 것임<sup>5)</sup>
  - 6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중은 2010년 5.6%에서 2017년 12.3%로 높아졌고 부상자 수 비중도 유사하게 상승하고 있음
  - 60~69세, 70~79세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1인당 평균 대인보험금(2017년 기준)은 각각 535만 4천 원, 798만 7천 원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전체 평균 234만 2천 원의 2배를 넘는 수준임
- 고령 운전자의 치료비 증가와 최저임금 상승은 향후치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합의에 의해 향후치료비가 지급되는 관행 때문임
  - 최저임금 상승은 임금소득 상승으로 이어지는데, 교통사고 환자들의 사고로 인한 보상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2013년 최저임금이 6.1% 증가한 후 2014년 평균 향후치료비는 5.4%, 2014년 최저임금이 7.2% 증가한 후 2015년 평균 향후치료비는 7.2% 증가하였고, 2016년 최저임금이 8.1% 증가하였을 때 2017년 평균 향후치료비는 7.8% 증가함
- 정부의 공적보장 확대 정책으로 건강보험 비급여항목이었던 한방진료 추나요법이 급여로 전환될 예정인데, 이로 인해 자동차보험 치료관계비는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sup>6)</sup>

5) 자세한 내용은 전용식(2019. 1. 21), 「운전자의 고령화와 자동차보험」, 『KiRi리포트』 참조

6) 송윤아(2019. 3. 11),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자동차보험에 미치는 영향」, 『KiRi리포트』 참조

〈표 3〉 최저임금 상승률과 향후치료비 증가율

(단위: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평균 향후치료비 증가율	3.9	5.4	7.2	6.8	7.8
최저임금 상승률	6.1	7.2	7.1	8.1	7.3

주: 평균 향후치료비 증가율은 향후치료비 증가율을 3년간 이동 평균한 수치임  
 자료: 개발원; 고용노동부

■ 경제·사회 변화에 따른 구조적인 보험금 원가상승 부담을 흡수하고 자동차보험 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변화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원가 인상은 자동차보험료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나 지속되는 저성장·저금리, 보험회사의 시장경쟁 등으로 인해 자동차 보험료 조정은 신축적이지 못할 것임
- 추세적 보험금 원가 인상으로 요약될 수 있는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구조변화 이전에 수립된 자동차보험 보상기준, 보상절차, 요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들은 과도한 시장 확대 경쟁보다는 계약자의 위협에 부합하는 요율정책, 사업 효율화를 통한 비용절감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함 **kiri**